

한국언론학회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26.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윤리 실천요강>을 바탕으로, 한국언론학회가 발간하는 3개 학술지인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이하 ‘학술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학술지의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학 지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이 있는 논문투고자,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논문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

제3조(표절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절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상당수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3.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가 상식화된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5. 투고자는 온라인 공개 표절검사시스템(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검사 결과지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장과 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은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은 검사결과를 확인 후 논문 표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투고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저작물의 창작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자 기여도에 따른 표시 및 데이터 공유)

1.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구체적인 연구 기여 역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투고자는 논문 작성에 활용된 연구 데이터의 공개 여부 및 보관 방법(데이터 아카이빙 등)에 대한 정책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작성에 참여한 저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최초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특수관계인 저자 참여 확인서' 및 '연구 기여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본 심사 전, 연구 참여의 정당성과 기여 성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사전 내부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 표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심사 회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연구대상자 보호 및 생명윤리)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문조사, 실험, 심층인터뷰, 관찰 등)를 수행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발적 동의(연구 목적·내용의 사전 고지 및 동의 획득) 등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관해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복게재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2.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본인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할 수 없으며,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기존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본 학술지에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국내외 타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거나, 반대로 타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본 학술지에 동시 투고하는 '이중투고(동시 심사)'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적발 시 편집위원회는 공식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 부적합(Desk Rejection) 판정을 내리며, 이 건은 학술지 실적 평가를 위한 '논문탈락률'에 공식 합산한다.
4.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8조(위조 및 변조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조 및 변조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자는 특정한 연구결과 또는 결론을 도출할 목적으로 일차자료 또는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수로 인한 데이터 오류라도 이를 확인·수정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9조(왜곡 금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왜곡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왜곡이라 함은 고의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2.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제10조(논문의 수정)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저작권침해 침해 확정)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저작권 침해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확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2조(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기준)

1. 대형언어모델(LLM)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는 연구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문의 저자로 기재될 수 없다.
2. 투고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에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과 범위(도구명, 활용 목적 및 방식)를 방법론 절 또는 논문 말미의 선언부(AI Disclosure)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문법 교정, 문체 개선 및 번역 등 어학적 보조(AI-assisted editing)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명시 의무를 면제한다.
3. 투고자는 연구 수행 단계에서 미공개 연구데이터, 인터뷰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보안과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AI 시스템에 입력되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AI 도구가 제시한 요약, 통계 분석, 수치해석, 인용 정보 등은 저자가 그 정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AI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학술적 오류 및 연구윤리 위반(위조·변조·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AI 도구를 악용하여 위조·변조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논문에 포함한 중대

한 연구부정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 중단 또는 게재 철회 조치를 취하고 제21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준수

제13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보편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소속 기관 및 학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준수

제16조(기간 준수 및 심사 회피)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스스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투고자와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18조(투고자의 존중)

1.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논문심사결과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제19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및 심사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2.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평가를 위해 획득한 논문 등의 평가자료를 대형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단, 심사위원 본인이 작성한 심사평의 문법 오류 수정이나 문체 개선, 윤문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투고 논문의 고유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제20조(제보 및 심사중단)

1. 제보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윤리 규정의 위배로 제보된 논문이 심사 중인 경우 심사를 중단한다.

제21조(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되거나 인지된 사안을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이후의 조사·심의·의결·징계 및 후속조치는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구윤리 동의)

논문투고자, 담당편집위원 및 심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한다. 논문투고자가 연구윤리 준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교육부·한국연구재단과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22일 학술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10월 1일 이 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시행한다.